

# 음악대학교원인사소위원회내규

시행일 : 2018. 9. 1.

제1조 (목적)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총장 및 음악대학 학장이 음악대학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및 계약제 임용의 경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사항

2. 음악대학 교원 승진 및 상별에 관한 사항

3. 법령 또는 본교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

4. 기타 음악대학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
2. 교수연구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의 실적

3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
4. 계약 시 명시된 재계약 조건의 이행 여부

제3조 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학장, 각 학과장, 기악주임교수 등 당연직 위원과 음악대학 전체 교수회의에서 2명을 다수결로 선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음악대학에 재직하는 모든 전임교원은 위원회 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선출직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에 음악대학 전체 교수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.

⑤ 위원회 위원장은 학장으로 하며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⑦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 (회의 소집)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위원회 위원의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3. 음악대학 전임교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제5조 (의결정족수)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
제6조 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 (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)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회의 참석 등 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8조 (보칙)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1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규정) 본 내규가 시행되기 이전에 정해진 재임용 및 승진 등에 필요한 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 (내규 제정 후 최초 위원회 임기) 본 내규에 의해 구성된 최초 위원회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, 선출일에서 차기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.

제4조 (배석) 자료조사, 회의자료 취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은 행정실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